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이홍민 의원)

의안 번호	19-134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: 2019. 9. .

발 의 자: 이홍민, 강명숙, 김기석, 김성희,
김종선, 신종갑, 이민석, 조영덕

1. 개정이유

거리예술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필요 시
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거리예술가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6조제2항)
 - 지역주민의 소음피해 등에 따른 거리예술 활동 규제 사항

3. 관계법령

- 가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1조
- 나. 「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0조

4. 예산조치: 없음

5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: 2019. 9. 11. ~ 2019. 9. 16.
- 나. 불임: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청장은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등에 따라 거리예술의 활동시간·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거리예술가 준수사항)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6조(거리예술가 준수사항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구청장은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등에 따라 거리예술의 활동시간·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.</u>

【관 계 법 령】

「소음·진동관리법」

제21조(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(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, 이하 "생활소음·진동"이라 한다)을 규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6. 9., 2013. 8. 13.>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·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「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

제20조(생활소음·진동의 규제)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.

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. 다만, 산업단지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.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
3.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
4. 생활소음·진동이 발생하는 공장·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(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), 운동·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

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·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확성기에 의한 소음(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)
 2.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
 3.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
 4. 공장·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
-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·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2항 (신설)
: 구청장은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
등에 따라 거리예술 활동시간의 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 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일자리국 문화예술과 정지현
연 락 처	02-3153-8355